

의안 번호	2207	2024 ~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2. 1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2. 1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2. 15.(금)

2. 제안이유

-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균형있는 기구 설치 및 인력 수급 적정성 유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계획기간: 2024년 ~ 2028년(5년)
 - 기본방향
 -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기능·인력 재배치
 - 기준인건비 준수 및 중기지방재정계획(2024~2028년) 연동

- 민선8기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 고려
 -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연차별(2024~2028년) 탄력적 인력 운영
- 기구조정 및 계획정원
- 기구 조정 : 증 담당3, 감 동1, 주무1
 - 공무원 정원 : 증 14명
('24년 증8, '26년 증3, '27년 증1, '28년 증2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계획(안)을 중구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“기본인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6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 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2. 6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